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에 관한 연구: ‘bbb 코리아’ 전화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홍 서 연
(단국대)

1. 서론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미란다의 원칙’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김민지, 피세영 2014). 게다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 경우는 검거, 체포, 구금되는 상황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므로, 이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김민지 2012: 60).

국내 현행법상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 권리를 고지해야 하는데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경우 통역인¹⁾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지만,

1) 경찰청은 매년 경찰통역인 모집 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와 간단한 전화 테스트를 통해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통역 서비스를 활용한다. 국내 대법원 예규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피의자에 대해서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²⁾고 명시함으로써 필요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것(주호노 2014: 183)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체포나 현장 조사, 검문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통역인을 소환하여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청에서 제작한 ‘현장 경찰관을 위한 외국인 범죄 수사 길라잡이(2017)’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의 영어 번역본을 제시하거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6개 언어로 미란다 원칙이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리폰’을 통해 해당 외국어로 다시 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네이버 파파고)과 전화통역 서비스(관광안내전화, ‘bbb Korea’, 다누리 콜센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통역인을 대동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최초 사건 현장에서 통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경찰관서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양희철 2017: 59)³⁾, 이때 경찰은 ‘bbb 코리아’ 통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⁴⁾하고 있다.

모든 사법통역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피의자 권리 고지의 통역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집단의 경우 피의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으며 피의자의 권리를 더 쉽게 포기하는

언어별 통역인을 선발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활용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자료(2017년 11월 2일, 국회의원 서영교, 대한변협 주최)

4) 2018년 기준으로 ‘bbb 코리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는 94,060건이다. 그 중에서 경찰에 제공한 통역서비스는 24%로 약 22,570건에 달한다(bbb 코리아, 2019년 임시이사회 및 정기총회 자료, 2019.2.25).

경향이 있고(Cooper and Zapf 2008; Rogers, Harrison, Shuman, Sewell and Hazelwood 2007; 김민지, 피세영 2014: 39에서 재인용), 외국인 피의자는 통역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듣고, 이해하고, 행사해야 하므로 통역인의 권리 고지 이해와 통역 능력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지은 2017b: 132).

한국경제신문의 보도⁵⁾에 따르면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며 마약을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이 압수된 물품의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하면서 공소 유지에 차질을 빚을 뻔한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미란다 고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피의자가 불법체포를 주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고(양문승, 나유진 2009: 69), 피의자 권리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시작이면서 핵심적인 요소인 피의자 권리 고지(이영돈 2012: 85)가 어떻게 통역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이유진 2016; 이지은 2012, 2017a, 2017b;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9)을 기준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할 때 활발하게 사용하는 'bbb 코리아' 전화통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란다 원칙은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이고, 외국인 피의자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어떤 내용보다 정확하게 통역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결과를 유발한 요인을 대화 참여자, 즉 경찰, 통역인, 외국인 피의자로 나누어 분석할 것인데, 이를 통해 사법통역의 정확성에 통역인 이외에도 어떠한 요소가 작용하는지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한국경제신문(2019년 3월 23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3225587i>

2. 피의자 권리 고지⁶⁾와 통역

헌법 제12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고지와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보장은 헌법과 형소법상의 적정절차준수와 인권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정들이며 수사 실무에서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사항이다(황의갑 2010: 147).

피의자 권리 고지의 중요성에 따라 국내에서는 피의자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피의자 권리 고지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체포 시에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하고(이영돈 2012),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김재운 2018)도 있었다. 피의자 고지문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김민지(2012)는 피의자 고지문에 어렵고 애매한 표현이 사용되고, 피의자의 연령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한 버전으로 고지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연령과 경험에 따라 피의자 권리 이해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해도 측정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성인과 미성년자의 이해도를 측정한 연구(김민지, 피세영 2014), 소년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은경, 김나리 2013),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신의기, 강은영 2002)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 권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어로 전달되는 피의자 권리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지 않은데, 그 고지 대상이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해당 권리를 통역을 통해 고지하는 것은 그리 간

6) 현행법상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 시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체포 시 권리 고지를 경찰실무는 물론 사법부에서도 ‘미란다 원칙’의 고지라고 부른다(이영돈 2012: 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 권리 고지를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고, 진술거부권의 개념을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단한 문제가 아니다(Shuy 1997; Gibbons 2001; 이지은 2017a: 360에서 재인용). 체포 등의 상황에서 외국인 피의자는 통역인에 의지하여 해당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통역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다(이지은 2017b).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은데, 피의자 권리 고지에 특정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Nakane(2007)는 실제 통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의자 권리 고지를 통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고, 통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통역인의 자질과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찰의 말차례 취하기와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려는 경향 등을 들었다. 국내에서는 피의자 권리 고지문을 통역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통역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해당 권리를 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이지은 2017b)가 있었고, 전문적이지 않은 통역인이 피의자 권리를 통역하는 경우 법률지식 부족과 해당 언어로의 통역 능력 부족으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역되는 실제 통역 사례를 제시한 연구(Lee 2017)도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권리 고지문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애매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모국어로 고지되는 경우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제도적으로 다른 환경에 익숙한 외국인 피의자가 통역을 통해 해당 권리를 고지받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3. 연구 방법

3.1 통역담화 데이터 수집 및 전사

전화통역 담화 데이터는 비영리법인 'bbb 코리아'에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한 뒤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어로 통역이 진행된 경찰통역 담화 중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청취하여 분석하였다. 통역담화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표 1〉 통역담화 데이터

번호	통역인		사건 내용	참고	통역시간 ⁷⁾
	코드	국적			
1	BC	CIS	폭행	경찰통역인	4분44초
2	LE	CIS	불법체류	-	4분10초
3	AD	CIS	절도	-	3분08초
4	SM	한국	상해	-	6분48초
5	JY	한국	상해	-	2분54초
6	CW	한국	교통사고	경찰통역인	3분37초
7	LS	한국	성매매알선	-	2분15초
8	LG	한국	특수절도	-	4분27초
9	SJ	한국	재물손괴	-	1분41초
10	JI	한국	절도	-	2분07초
합 계					36분 06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사자료에 포함된 이름, 국적은 연구자가 임의로 바꾸었고, 통역인을 구분하기 위해 코드⁸⁾를 부여하였다. 외국인 피의자의 녹음 데이터에서 통역인이 현재 경찰통역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힌 경우에는 이를 참고사항에 반영하였고, 그렇지 않고 경찰통역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총 10건이고, 시간은 총 36분 06초이다. 통역담화 데이터는 Jefferson의 전사체계를 참고(Atkinson and Heritage 1984; Ochs, Schegloff and Thompson 1996; 김규현 2016: 182에서 재인용)하여 약식으로 전사하였다. 전사자료에서 사용된 문장부호는 전사체계의 부호와 관련이 없으며, ‘[’ 표시는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말을 시작한

- 7) 통역담화 데이터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고 통화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전이나 후에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 권리 고지만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통화 시간을 통역시간으로 명시했고, 다른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부분에 대한 시간만 명시하였다. 통역시간에는 전화기를 바꿔주거나 기다리는 시간 등도 포함되어있다.
- 8) 통역인 코드는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통역인 이름의 이니셜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혀둔다.

지점을 의미한다. 전사자료에서 러시아어로 발화된 부분은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3.2 통역 평가

통역 평가자는 원어민 1명, 한국인 2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자 3인은 경찰 통역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검찰 및 경찰에서 통역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통번역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이다.

〈표 2〉 평가자 정보

평가자	직업	참고
A	전문 통번역사	경찰통역인
B	전문 통번역사	경찰통역인
C	전문 통번역사	경찰 및 검찰 통역 경험 다수

평가 기준은 피의자 권리 고지 평가를 다룬 이지은(2017b)의 연구에 따라 3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용전달이 충실하면 3점, 대략적인 의미를 전달한 경우는 2점, 중대한 오류가 있어 내용 전달이 부족하면 1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⁹⁾. 통역 데이터가 녹음파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 통역 내용을 전사한 파일에 기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역의 정확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경찰이 요청한 통역 내용의 분량과 난이도가 고르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 내용을 불분명하게 고지하는 등 원발화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통역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역인 평가 결과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미 발화가 된 내용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없어서 원발화에 기반하여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9)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2019)의 통역 평가 사례연구에서는 점수를 4개(최상, 상, 중, 하)로 구분하였고, 정확성, 목표 언어(문법, 문장구조, 어휘, 발음), 전달력(속도, 어조, 말투)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척도를 적용한다면 통역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역 녹음 데이터가 아닌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해당 평가척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4. 분석 결과

앞서 언급했던 평가 방식에 의한 통역 평가 결과를 소개하고, 이어서 미란다 원칙을 통역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역인, 경찰, 외국인 피의자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4.1 통역의 정확성 평가 결과

통역의 정확성 평가는 평가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통역 평가 결과

번호	통역인 코드	평가점수
1	BC	2.3
2	LE	1.7
3	AD	1.6
4	SM	1
5	JY	1
6	CW	2.3
7	LS	1.3
8	LG	1
9	SJ	1
10	Jl	1.6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점 이상 평가점수를 받은 통역인은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6번과 1번 통역인의 점수는 2.3점으로 동일하다. 이 두 통역인은 경찰통역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의자 권리를 통역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다른 통역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통역인들은 평가점수가 1점대로 대부분의 통역인이 미란다 원칙을 통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통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누락, 오역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서 외국인 피의자에게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통역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의 실험 연구(이지은 2017b)에서도 해당 권리를 충실하게 통역한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화와 대면이라는 통역방식과 통역인의 어학능력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란다 원칙을 법률적 등가를 이루도록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2 통역인 요소

(1) 통역인의 법률지식과 통역기술의 부족

[사례1_LS]

- 410) 경11) 올라, 2017년 10월 23일 15시 14분에 올라 너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아니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성매매알선법이랑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 5 통 *Милиционер сказал, что в 2017-ом году 23-ого октября в 15 часов вы, из-за того, что вы нарушили право по поводу сексуального и нарушил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е право, и поэтому они арестовали вас.*
경찰이, 2017년 10월 23일 15시에 성관련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당신을 체포했다고 해요.
- 6 피 *Я поняла.*
알겠어요.
- 7 통 *Вы можете защищать себя с помощью адвоката. Понял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 8 피 *Да, я поняла. Я не нарушала сексульное право. Я приехала как туристка и скоро выезжаю. У меня есть обратный билет.*
네, 이해했어요. 나는 성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관광객으로 온 것이고 곧 떠나요. 귀국 비행기표가 있어요.

- 9 통 *Вы скоро уезжаете?*
곧 떠나신다고요?
10 피 *Да.*
네.
11 경 전달하셨어요?
12 통 네, 전달해드렸고요. 자기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곧 출국할 거라고 그래요.

위의 사례에서 경찰은 1) 사건 발생 일시, 2) 피의자의 혐의, 3) 피의자 권리인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한 번의 말차례에 전달했다. 통역인은 사건 발생 일시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은 통역(5행 참조)하였지만, 현행범이라는 내용과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통역하지 않았고, 성매매알선법은 성관련법(5행 참조)으로, 변호인 선임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7행 참조)으로 통역하였다.

LS 통역인은 통역점수 1.3을 받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해당 내용을 러시아어로 전달할 만한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권리를 정확하게 통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역인이 수사용어 및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시간(내국인 조사와 비교하여 최소 2배 이상)이 소요되고, 통역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임창호 2008: 323). 또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사례2_JY]

- 4 경 000인이예요. 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서 체포하는 거고, 미란다 원칙 있죠.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체포 적부심

- 10) 말차례 번호가 4로 시작된 것은 앞서 경찰과 통역인이 인사를 나누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11) 경찰은 ‘경’, 통역인은 ‘통’, 외국인 피의자는 ‘피’로 표기하였다.

- 신청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고지 좀 해주시겠습니까?
- 5 통 네.
- 6 경 잠시만요.
- 7 피 Алло.
- 여보세요.
- 8 통 Алло. Слышите меня?
-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요?
- 9 피 Да, да, да.
- 네, 네, 네.
- 10 통 Да. Вы сей час арестованы, потому что вы
уголовный преступник.
- 네, 당신은 형사범으로 체포되었어요.
- 11 피 За что я не пой му, за что?
-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 12 통 Дослушай те, [до конца.
- 끝까지 들어보세요.
- 13 피 [Я что [совершил?
- 내가 무엇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 14 통 [Вы можете пригласить
вашего адвоката, если хотит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жалоба, то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жалобу также. И это
слово от полицейского. Передай те трубку.
- 당신은 원한다면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¹²⁾. 이게
경찰의 말입니다. 전화 바꿔주세요. (전화기를 경찰에게 건네
줌) 그분이 왜 체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방금 말씀
하신 거는 전해드렸고요.

12) 통역인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용어가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한 러시아어 용어를 알지 못해 단순히 'жалоб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동일한 뜻으로 옮겼을 때 어색하므로, '불만'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번역하였다.

위의 대화는 JY통역인의 사례로 통역 점수는 1점이고, 중요한 정보의 통역이 누락되거나 오역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권리가 외국인 피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은 1) 상해 혐의이고,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이며, 3)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4)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누락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전달되었다. 형사범이라는 내용은 경찰의 발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통역인이 임의로 추가하였다. 또한 체포적부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통역인은 러시아어 ‘жалоб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불만, 하소연, 소송, 상소’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경찰이 의도했던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2) 통역인의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3_LG]

- 1 경 00파출소 경찰관이에요. 저희가 000 분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체포확인서랑 신체 확인서에 사인하는 게 있어요.
- 2 통 네.
- 3 경 통역해주실 게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 4 통 [미란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되나요?
- 5 경 그런 권리가 있고 여기에 사인하시면 된다고, 이름 쓰고 사인하면 된다고 번역 좀 해주시겠어요?
- ** 중간 생략 **
- 15 통 여보세요.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제가 전문을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어떤 어떤 원칙을 말씀드릴까요?
- 16 경 아, 그냥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 17 통 그거하고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 18 경 네. 바뀌 드릴게요.
- 19 피 Алло.
여보세요.
- 20 통 Алло. Вы знаете принцип Миранды?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хранить молчание. Всё, что вы скажите, может 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о против вас в суде. Ваш адвокат може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ри допросе. Если вы не можете оплатить услуги адвоката, он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государством. Вы понимаете свои права?
여보세요. 미란다 원칙 아세요? 당신은 묵비권이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작용될 거예요. 당신 변호사가 조사 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만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제공될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이해했나요?
- 21 피 Да. А адвокат платно?
네. 변호사는 유료인가요?
- 22 통 Мне надо спросить полицейского, но вы подпишите ваше имя.
경찰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당신은 이름을 쓰세요.
- 23 피 Хорошо.
알겠어요.

위의 대화는 LG 통역인의 사례로, 통역인의 점수는 1이다. 경찰은 1)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2)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3)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통역해 줄 것을 요청(3행 참조)했다. 그러자 통역인은 미란다 원칙을 통역하면 되는지(4행 참조), 어떤 원칙을 통역해야 하는지(15행 참조) 확인하고,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된다는 답변(16행 참조)을 듣고 통역을 시작한다.

통역인은 미란다 원칙을 아는지 물어본 뒤에 1) 묵비권이 있고, 2) 당신이 말하는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작용될 것이며, 3) 변호사가 조

사에 참여할 수 있고, 4)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국가가 변호사를 제공한다고 통역하였다. 통역인이 통역한 내용에는 원발화에 없는 1)번, 2)번, 4)번 내용이 포함되었고, 경찰이 요청한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통역되지 않았다.

통역 내용을 보면 통역인은 사법통역에 경험이 있거나 해당 문구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이 요청한 내용 대신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통역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제공되는 것은 공판 과정에서이지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김재운 2018: 80)이 있을 뿐이다. 통역인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정보를 외국인 피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통역 내용과 경찰이 고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후 외국인 피의자가 체포확인서에 서명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서명했다면 경찰이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이해하고 서명한 결과가 된다.

4.2 외국인 피의자 요소: 혐의 부인 및 국내 수사절차에 대한 거부

(1) 외국인 피의자의 혐의 부인

[사례4_AD]

- 3 경 000인을 체포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해 주세요. 본인,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알지요?
- 4 통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 те, вы слышите меня?*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내 말 들리세요?
- 5 피 *Добрый вечер, да, да, слышу, ага.*
안녕하세요? 네, 네, 들려요.
- 6 통 *Да, здравствуй те. Вас обвиняют в краже и вы арестованы. Вы [об этом знаете?*
네, 안녕하세요? 당신이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서 체포됐어요. 알고 있나요?
- 7 피 *[Ну получилась ситуация такая, что я зашел в хлебный магазин. Валялся телефон,*

вообще ничей. Ну я взял, а у меня телефон сломался, и я хотел позвонить своей супруге, потому, что я уже неделю, дней десять, не мог до нее дозвониться. ** 중간생략 ** Приезжает полиция, меня цепляет, короче телефон все. Я хозяину, я говорю, я его нашел. Но видите, что барьер это с языком, я не мог ему объяснить. Хозяину, хозяину, телефон отдали, все в целостности сохранности, он не поцарапанный, вообще ничего, ну отдали. ** 이하생략 **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빵집에 갔어요. 주인 없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었죠. 내 핸드폰이 망가졌는데 아내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이미 일주일, 열흘을 전화를 못 했거든요. ** 중간생략 ** 경찰이 오더니 잡더라고요. 핸드폰이랑 다. 나는 주인한테 내가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언어장벽이 있어서 나는 주인한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이랑 모든 걸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줬어요. 핸드폰은 흠집도 안 났고, 돌려줬어요. ** 이하 생략 **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화법으로 ‘본인,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알지요?’라고 통역해 줄 것을 요청(3행 참조)했다. 이후 통역인이 통역을 하고 있는 중에 외국인 피의자는 말겹침(overlap)을 유발하며, 발생한 사건에 대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변명을 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7행 참조).

미란다 원칙을 통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통역인의 통역 기술이나 역량 이외에도 다른 대화 참여자로 인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외국인 피의자의 저항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요지를 말하고, 체포의 이유를 설명한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외국인 피의자는 통역인의 통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의사실이나 체포의 이유에 대해 변명하면서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한다(홍서연 2019). 이때 통역인은 경찰이 요청한 내용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말차례를 취해 자기변명을 시작한 외국인 피의자의 발화 내용까지 통역해야 하므로 기억해서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져 통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외국인 피의자의 미란다 원칙에 관한 질문

[사례5_SM]

- 3 경 여기 이분, 미란다 원칙, 우리가 고지했거든요. 그거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 4 통 *Когда арестовали вас, они зачитали вам правило М иранды?*
당신을 체포했을 때 미란다 원칙을 당신에게 고지했나요?
- 5 피 *Я чё-то не совсем понимаю вас.*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 하겠어요.
- 6 통 *Они зачитали вам правило Миранды, по которому вы можете пригласить адвоката? Вы слышали об этом или нет?*
그들이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이에 대해서 들었나요?
- 7 피 *Угу, адвоката.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ста, здесь адвокат, здесь платно?*
음, 변호사요. 여기 변호사는 유료인가요?
- 8 통 *Это я попозже уточню. Они вам зачитали правило Миранды?*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당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나요?
- 9 피 *Нет, я просто себя не считаю виноватым. Я сей час не знаю, что предъявляют. Я не понимаю сей час э того. Поэтому я пытаюсь позвонить человеку...*
아니, 나는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를 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은 위의 전화통화 전에 이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위의 사례에서는 해당 권리를 고지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통역인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느냐'고 직역(4행 참조)하자 외국인 피의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대답(5행 참조)하고, 통역인이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라고 하자, 피의자는 변호사가 유료인지 질문(7행 참조)한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러시아 및 CIS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은 '미란다 원칙'이라는 단어를 듣고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와 같은 권리고지가 의무화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어서¹³⁾ 모국어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란다 원칙'이라고 직역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통역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피의자는 국내 수사절차에 관해 잘 모를 뿐 아니라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피의자 권리 고지를 듣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질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통역인은 외국인 피의자의 질문을 잠시 보류하고 경찰이 요청한 내용을 끝까지 통역하거나, 혹은 경찰이 요청한 내용을 보류하고 외국인 피의자의 질문이나 발화를 경찰에게 먼저 통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통역인이 기억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져 자칫 내용이 누락 및 왜곡될 수 있다.

(3) 외국인 피의자의 국내 수사절차에 대한 저항

[사례6_AD]

- 4 경 이 종이에 사인은 이거는 저희가 러시아로 다 해냈는데, 이거는
본인이 체포된 사유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맞으면 사인해주세요 라고 말해주세요.
- 5 통 네.
- 6 피 *Алло.*
여보세요.
- 7 통 *Вот, и сей час они что-то вам показывають, [да, там
написанное.*
자, 지금 당신한테 뭔가 보여줄 건데요, 거기 쓰여 있는 게.

13) 러시아의 경우 2007년,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카자흐스탄은 2017년 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홍서연 2019: 149).

8 피

[Да, он мне дает другую бумажку, написано - «вы с поличным за совершен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А какое я сделал преступление? Я ж его не из сумки вытащил, не с кармана вытащил. Он валялся, вы понимаете, че? Я же не знаю, вот написано тут первый параграф написано - «вы с поличным за совершен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том - «без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согласно 212-ой статье уголовного процессуального права подвергаетесь аресту.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хранить молчание, а также можете выбрать адвоката,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защиты, если вы имеете оправдате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вы можете его высказать», и все, понимаете? Я эту бумажку не буду, наверное, подписывать.

네, 그가 지금 다른 종이를 주는데, “당신은 현행범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내가 그걸 가방에서 꺼낸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놓여 있었다고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당신은 현행범이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게 있으면 말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이 종이에 서명 안 할 거예요. ** 이하 생략 **

[사례6]에서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의 체포사유가 적혀있는 문서를 보고, 사인을 하라고 요청(4행 참조)하고 있다. 통역인이 경찰의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 중간에, 외국인 피의자는 말차레를 빼앗아 경찰이 보여준 문서에 러시아어로 쓰여 있는 내용을 읽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8행 참조)하고 있다. 전사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위의 대화 이후에도 외국인 피의자는 한국어로 된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우선 외국인 피의자는 ‘현행법’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다른 사람의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낸 것이 아니고, 놓여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한 종이에 쓰여 있는 국내 형소법의 조항과 미란다 원칙을 통역인에게 읽어주면서 서명하지 않겠다고 저항했다. 이는 외국인 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 수사 절차,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수사 과정에 있어서 거부감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임창호 2008: 292)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3 경찰 : 많은 내용의 통역 요청, 미란다 원칙의 의례적인 고지

(1) 경찰이 한 번의 말차례에 너무 많은 내용의 통역 요청

[사례7_BC]

4 경 네,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네)¹⁴ 그래서 통역을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현행법 체포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번역기로 해서... (네) 그런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가지고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번역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 남성분 두 분인데, 지나가던 남성분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다투셨는지, 왜 다투셨는지, 왜 때리게 됐는지 좀 여쭙봐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통 네, 바꿔주세요.

경 네.

통 *Алло.*

여보세요.

피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 те.*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통 *Да, полицейский просит перевести для вас, что, если я правильно поняла, арестованы за попытку причинения вреда здоровью кому-то, похоже, какому-то иностранцу. И он просит зачитать вам права: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не отвечать на их вопросы; имеете право не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на которые не хотели бы отвечать, кроме того,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пригласить для себя своего адвоката, если он у вас есть.*

네, 경찰이 당신에게 통역해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은 어떤 외국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던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권리를 고지해 달라고 했어요. 당신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위의 사례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을 통역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통역인의 ‘네’와 같은 청자반응신호를 고려하면 여러 번의 말차례에 걸쳐서 전달한 정보이지만, 통역인은 외국인 피의자가 전화를 건네받았을 때 한 번에 전달해야 한다. Nakane(2007)가 지적했던 것처럼, 경찰이 한 번의 말차례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통역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통역인이 전달해야 하는 내용은 1) 폭행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2) 변호인 선임, 3) 변명의 기회, 4) 체포 적부심 청구 가능, 5) 왜, 어떻게 다투게 되었는지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통역 내용에 ‘선임’, ‘변명의 기회’와 같이 애매한 표현과 ‘체포 적부심’ 등 어려운 법률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통역하기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14) 경찰이 말을 하는 중간에 통역인은 듣고 있다는 ‘청자반응신호’를 보냈고, 이를 별도의 말차례로 구분하는 것이 옳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를 괄호 속에 표시했음을 밝혀둔다.

이후 통역인의 통역 내용을 보면 폭행 혐의로 인한 체포, 변호인 선임과 진술거부권에 대한 내용은 통역이 되었지만 체포적부심이 청구 가능성은 통역되지 않았고, 원발화에 없었던 묵비권에 관한 내용은 추가되었다. 위의 통역인은 경찰 통역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경찰통역 경험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녹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말차례에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고자 하여 통역인이 이를 통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의례적인 미란다 원칙 고지

[사례8_LE]

- 3 경 저희가 지금 000 사람을 체포했거든요. 그 체포하면서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이 사람에게 고지 좀 해주실래요?
- 4 통 네? 미란다 원칙이 뭐예요?
- 5 경 아, 그 체포하면서 고지하는 거 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지해 주시면 돼요.
- 6 통 아.

위의 사례에서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찰의 발화를 살펴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달라고만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인지 말하지 않는다(4행 참조). 통역인이 미란다 원칙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경찰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달라고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5행 참조)한다.

경찰과 외국인 피의자의 대화는 전형적인 제도대화인데, 제도대화의 특성상 대화 참여자들 간의 법률적인 지식에 있어서 대화 참여자 간에 불균형을 이룬다(박용익 2006; 진제희 2006). 경찰은 미란다 원칙의 법률적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해당 권리를 고지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의 업무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지 않은 통역인이라면 미란다 원칙을 통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제대로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법 제도의 차이나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피의자가 해당 권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임창호 2008: 308).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

법에 의거하여 피의자 권리 고지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고지 방식이 의례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에 기초하며,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의자의 경우 통역인의 역량에 따라 권리 고지 절차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지은 2017a: 357-359). 따라서 경찰이 통역을 통해 외국인 피의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 ‘bbb코리아’ 전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사례 10건에 대해 정확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해당 권리 고지 통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경찰, 통역인, 외국인 피의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결과 10명의 통역인 가운데 미란다 원칙을 정확하게 통역한 사례는 드물었고, 2명만이 비교적 충실하게 통역하였는데, 이를 통해 법률적 등가를 이루도록 미란다 원칙을 정확하게 통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을 정확하게 통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역인이 법률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해당 용어를 외국어로 전달할 수 있는 통역능력이 부족하여 전문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미란다 원칙을 정확하게 통역할 수 없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통역하기 위해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언어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지은 2017b; Lee 2017)를 뒷받침한다.

둘째, 외국인 피의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정하거나 국내 수사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저항하는 경향이 있었고, 통역이 되었더라도 국내에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통역인이 기억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지고, 말차례 순서를 조율해야 하는 등 통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경찰이 전문적인 법률용어가 포함된 많은 정보를 한 번의 말차례에 전달하거나 통역인이나 외국인 피의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피의자 권리를 애매

하게 표현하거나 의례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경찰이 길게 얘기하거나 의례적으로 해당 권리를 고지하는 경우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기 힘들다(이지은 2017b; Nakane 2007).

그러나 위의 연구결과를 참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평가를 위해 사용된 통역 담화가 전화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물리적으로 전화를 건네줘야만 말차레를 취할 수 있다는 전화통역 담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면통역 담화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말차레 취하기 및 발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권의 사례 중에서도 러시아어 사례에 국한된 연구이므로 분석결과로 제시한 내용이 다른 언어권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담화분석을 위해 실제 통역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험연구에서 관찰할 수 없는 발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원발화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역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전화통역을 활용하는 수사기관에서는 통역의 정확성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들을 대상으로 (가칭)전화통역 활용 가이드를 배포할 수 있겠고, 또한 비영리법인 'bbb 코리아'와 협의하여 경찰통역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경찰통역을 전담할 수 있는 통역인과 우선적으로 전화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7) 「현장 경찰관을 위한 외국인범죄 수사 길라잡이」, 서울: 경찰청 외사국.
- 김규현 (2016) 「담화분석」, 김해연 (편저), 『대화분석』, 서울: 종합출판 ENG, 175-239.
- 김민지 (2012)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3): 53-89.
- 김민지, 피세영 (2014)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한

- 국심리학회지』 28(4): 23-46.
- 김재운 (2018)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70: 65-86.
- 박용익 (2006) 「의사-환자 대화의 제도적 특징과 유형학」, 『텍스트언어학』 21: 207-237.
- bbb 코리아 (2019) 「2019 년도 임시이사회 및 정기총회 자료」, 서울: 비비비 코리아.
- 신의기, 강은영 (2002)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양문승, 나유인 (2009) 「최근 외국인 범죄 실태와 수사 대응전략 연구」, 『경찰학논총』 4(1): 55-90.
- 양희철 (2017)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자료.
- 이영돈 (2012) 「체포 시 피의자 권리고지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36(3): 85-100.
- 이유진 (2016) 「중국어 통역사의 법정통역 규범 인식 연구: 정확성 관련 규범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103-130.
- 이지은 (2012)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이지은 (2017a)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경찰 통역에서 난민 통역까지」,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 이지은 (2017b)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을 통해 본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 『번역학연구』 18(2): 127-150.
-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9) 「평가 척도를 이용한 사법통역 평가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0(2): 81-107.
- 임창호 (2008)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33: 281-332.
- 조은경, 김나리 (2013) 「소년법의 경찰조사 경험과 피의자 권리 이해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4): 3-25.
- 주호노 (2014) 「외국인범죄에 있어서 통역을 받을 권리: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49(1): 171-200.

- 진제희 (2006) 「기능단계별로 나타난 의료면담의 제도대화적 특징 연구」, 『사회언어학』 14(1): 137-163.
- 홍서연 (2019) 「경찰통역 담화 연구: 한러 대면 및 전화통역 담화의 대화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의갑 (2010) 「수사절차에 있어서 법과 실무의 괴리: 일선경찰관들의 적정절차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4(2): 145-166.
- Atkinson, J. Maxwell and John Heritage (1984)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P.
- Copper, Virginia and Patricia Zapf (2008) 'Psychiatric Patients' Comprehension of Miranda Rights', *Law and Human Behavior* 32: 390-405.
- Gibbons, John (2001) 'Revising the Language of New South Wales Police Procedures: Applied Linguistics in Action', *Applied Linguistics* 22(4): 439-469.
- Lee, Ji Eun (2017) 'Due Process and Legal Interpreting: Communicating Suspects' Rights to Silence and Counsel across Languages', *T&I Reivew* 7: 75-88.
- Nakane, Ikuko (2007) 'Problems in Communicating the Suspect's Rights in Interpreted Police Interviews', *Applied Linguistics* 28(1): 87-112.
- Ochs, Elinor, Emanuel A. Schegloff and Sandra A. Thompson (1996) *Interaction and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P.
- Rogers, Richard, Kimberly S. Harrison, Daniel W. Shuman, Kenneth W. Sewell and Lisa L. Hazelwood (2007) 'An Analysis of Miranda Warnings and Waivers: Comprehension and Coverage', *Law and human behavior* 31: 177-192.
- Shuy, Roger W. (1997) 'Ten Unanswered Language Questions about Miranda', *Forensic Linguistics* 4(2): 175-195.

[Abstract]

**Research on Interpretation of the Miranda Warnings:
Focused on telephone interpreting cases by BBB Korea**

Hong, SeoYoen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curacy of Korean-Russian telephone interpretation of the Miranda Warnings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interpretation in this setting. The Korean police usually use volunteer telephone interpreting services provided by BBB Korea, a language NGO, when they inform foreign suspects of their Miranda rights in their native languag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10 recordings of BBB Korea's Korean-Russian telephon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Miranda rights were not interpreted accurately in many cases for the reasons as follows: First, the interpreters engaged in police settings had a poor legal knowledge and lacked interpreting skills, and as a result, they were not able to interpret the Miranda Warnings accurately. Second, foreign suspects interrupted during interpreting to deny their charges or protest against Korea's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s. Third, police officers provided too much information, including legal terms, for interpreters to interpret at one time or used vague expressions, which hindered accurate interpretation. These findings show that not only interpreters but also police officers and foreign suspects influence the accuracy of interpretation of the Miranda Warnings.

▶ Key Words: legal interpreting, criminal suspects' rights, miranda warnings, community interpreting

▶ 주제어: 사법통역, 피의자 권리, 미란다 원칙, 커뮤니티 통역

홍서연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시간강사

oliya@hanmail.net

관심분야: 사법통역, 경찰통역, 지역사회통역, 사법통역 교육, 대화분석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